##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5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 김준혁ㆍ이수진ㆍ김동아

박지원 · 김영호 · 박희승

염태영 · 강유정 · 윤종오

김문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 법률 제 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5 중 "임용에"를 "임용 및 임용취소에"로, "제11조의3을"을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
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	등)
육기관 교원의 <u>임용에</u> 관하여	임용 및 임용취
는 「교육공무원법」 <u>제11조의</u>	소에
<u>3을</u> 준용한다.	<u>제11조의3 및 제11조의5를</u> -